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 규정 신설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80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 규정 신설(안 제35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12. 3.

다. 회 부 일: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 규정 신설(안 제35조)

가. 개정안 요지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5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 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더라도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35조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작·배급업자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폐쇄나 허가·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은 게임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상 큰 손실이 초래되거나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되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함에도 현행법은 제40조²⁾에 따른 청문 절차 외에는 별도의 사전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업자가 해당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법령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은 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행정벌 부과 전에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행정벌, 과태료 등의 제재를 규정한 입법례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특정 조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반면, 다른 특정 조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음.

- 다만, 현행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에 따라 제35조제1항³⁾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등 반드시 영업폐쇄나 허가·등록취소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불법적 의도나 법령 위반의 정도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 까지 청문 절차 외에 별도의 시정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다른 입법례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필요적·기속적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청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시정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동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를 통해 재차 시정기회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4)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3. ~ 8. (생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6. (생략)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별도의 시정명령 절차의 신설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나아가, 문체부는 악의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자의 경우 행정처분 후에도 영업정지 등이 누적되어 영업폐쇄에 해당할 때까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 때마다 시정명령을 통해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경우 이들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게임물관리위원회** 또한 현행 법령도 위법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고, 소상공인 감경 등과 같이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시정기회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바, 중대한 법령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를 신설할 경우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영화·음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도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음.

- **종합하면**, 개정안에 따라 행정처분 이전에 별도의 시정명령 절차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에게 법령 위반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및 많은 입법례에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행법도 이미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